



37

槽記4己9己年行上第1己己號

判 決

原告(被上告人)

被告(上告人)

서울特別市長

行政處分取消請求事件

서울高等法院4己9己年行上第6己己號同年9
月4日宣告判決

系戶牛表
法大

三

五

本任上言棄却此中

다한 것으로 담보없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.

冊

書理由上承別上理由告上訴代訴如稟

여가활동에 대한 2차 이유조사

金鎔銀新幣按此章施行
凡屬此項銀幣均准
兌換理由此依

業取諦規則(以下取諦規則으로略稱한다)의條目
同免許權者水各道知事로 되어 있으나 ① 司營

加乙等



業者가住所移轉할時는管轄官署에申告하면是하기로
되어있고 ②營業區域에關한制限規定이없으며 ③同規
則이總督府令인點을綜合하여各道知事の免許는管轄
道外에도效力이있다는判斷을한뜻이分명한바前項
原審이說示한 ① ② ③ 만으로써도各道知事管轄外에效
力이있다고斷定할수있을뿐더러同取締規則을施行키
爲한規定으로보이는同取締規則取扱手續第5條第2
項第7條第2項第9條第2項의規定을보더라도道知事
의免許가그管轄道外에미치는것을前提로하는것으로
서이는其原審과같이同取締規則自体로써道知事



제1호

판 결 이 유

의免許가管轄外에서도有效하다는結論을 내린
있다할것이니原審에所論과같은法律解釋을그릇
한違法이있다

同第2點에對하여

一件記錄에依하면保健社會部長官의通牒이있
고。이에副應하는成否를認定하는乙第1號證이있
으며이에對하여原審이何等言及이없음은明白하나上告理
由第1點에서說明한바와같이同取締規則에依한道
知事の免許가管轄外에效力을 가진다는것은同取締
規則自体로서抽出되는結論이고同取締規則取扱手續


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~~게시~~일자 : 2015-04-08

四三點五時

漢醫師斗免許를 가진 者는 免許의 鍼術灸術을 與
施할 수 있다 法의 根據가 缺은 以 所 論 亡 獨 自 의 見



改一字

解에不適하다한 것이고 이와同趣旨의原審判斷은正當하니原審에審理不盡의違法이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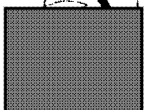
以上理由에因하여論^是는모다理由없으므로
本件上告를棄却하고訴訟費用은敗訴者の負擔
으로하기로하여關與法官의一致된意見으로主文과
같이判決한다

檀紀4294年10月19日

大法院

裁判長大法院判事

洪 淳 煥

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08

大法院判事

李 順 元

大法院判事

崔 性 淵

대한민국 법원

1

2

3